

교습비등 게시·표시

2018년 11월 27일 현재

학원(교습소)명		노튼 어학원									
위 치	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-e센텀 클래스원 2차 201호									
설립·운영자		신형진				전화번호		051-742-5009			
교습 과목	수강반 (수강대상)	총교습시간 (분/월)	금 액								
			교습비	기타경비						계	비고
				모의교사비	재료비	파북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		
	영어1	1,890	320,000	-	-	-	-	-	-	320,000	
	영어2	1,512	280,000	-	-	-	-	-	-	280,000	
	영어3	2,295	350,000	-	-	-	-	-	-	350,000	
	영어4	1,995	340,000	-	-	-	-	-	-	340,000	
	영어5	1,008	200,000	-	-	-	-	-	-	200,000	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※ 교습비등 반환기준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